# 강사인사규정

□ 제정: 2019. 7. 12.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"본교"이라 한다) 강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"강사"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비전일제로 근무하는 강사를 말한다.

#### 제 2 장 임 용

제3조(자격) 강사의 자격은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는 자로 한다.

제4조(임용시기)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학학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임용절차) ① 강사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- ② 신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강사임용심사위원회(이하 '심사위원회'라고 한다)를 두며, 신규임용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「강사인사규정 시행세칙」에 따른다.
- **제6조(임용기간)**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.
  - 1.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・출산휴가・휴직・파견・징계・연구년(6개월 이하)
  - 2.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 사망
- ② 임용기간은 통산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략적 필요에 의거 임용 기간 초과자를 해당 학과에서 재임용 추천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할 수 있다.
- ③ 임용할 수 있는 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해당 학기말까지로 한다.
- 제7조(임용제한)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- 1.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

#### **4-1-24** 강사인사규정

- 2. 학과(부) 및 본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재임용탈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4.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본 대학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

제8조(임용취소)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
- 2. 임용 시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허위 증명인 경우
- 3.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
- 4.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

제9조(당연퇴직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.

- 1.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
- 2.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
- 3. 국가공무원법 제33조,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
- 4. 해당학기에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자

제10조(면직)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.

- 1. 정관,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2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게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
- 3.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4. 학과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
- 5.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강된 경우
- 6.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
- 7.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게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- 8.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학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 - 가.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- 나. 수업 및 휴·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  - 다.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보여한 경우
- 9.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경우
- 10. 정치운동을 하게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게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·선동한 경우
- ② 강사가 면직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

## 제 3 장 재임용

- 제11조(재임용) ①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.
- ②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강사 재임용 신청서 (별지 서식 제2호) 및 관련한 서류를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,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기대 또는 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9조 제1호에 따라 당연 퇴직한다.
- ③ 재임용평가는 강사 재임용평가 기준(별지 서식 제3호)에 따라 재계약 예정 직전학기 중에 실시한다.
- ④ 강의평가 결과가 평가시행 직전 3개 학기 중 2개 학기 이상 전체 교원의 하위 10%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. 다만, 임용된 학기가 3개 학기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한다.
- ⑤ 강사 재임용평가 기준(별지 서식 제3호)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
- ⑥ 재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당연 퇴직한다.
- ①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(별지 서식 제4호)를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재임용 탈락 시 소명) ①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강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15일 이상의 기일 내에 교원인사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 한다.
- 제14조(재임용 거부)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
  - 2. 소속 학과가 폐과한 경우
  - 3.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채용한 경우
  - 4.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# 제 4 장 직무 및 근로조건

- 제15조(의무)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령과 본 대학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연계된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

#### 4-1-24 강사인사규정

하다.

- 1. 수업과 관련된 문서(강의계획서, 평가계획서,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) 작성 및 준수
- 2. 제1호에 따른 담당 교과목의 강의 및 성적 처리
- 3.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지도
- 4. 대학 지정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: 대학 학사운영 설명회, 성폭력예방 관련 교육, 장애 학생 인식 관련 교육 등
- ③ 강사는 학칙 제49조의 3에 의한 제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.

제16조(소속) 강사가 본 대학 내의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7조(교수시간)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당 9시간까지 할 수 있다.

제18조(처우) ① 임금은 임금계약으로 정한다.

- ② 사회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.
- ③ 강사가 본인의 사정으로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9조(휴직) ① 강사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출산휴가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.
- ②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.
- 제20조(휴직기간의 만료 등)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된다.
-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,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- ③ 휴직기간 중에는 재임용을 할 수 없으며,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제21조(휴직교원에 대한 처우) 휴직중인 강사는 본 대학 강사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다.

## 제 5 장 징 계

제22조(징계의 사유) 본 대학이 유지·경영하는 강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
- 1.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
- 2. 금품·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
- 3. 성희롱·성폭력, 기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 우

제23조(징계사유의 시효)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(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성폭력범죄, 성매매, 성희롱,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)을 경과하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다.

제24조(징계의 종류) ① 징계는 면직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한다.

-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.
-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, 보수의 3분 1을 감한다.
-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

제25조(강사징계위원회의 구성)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강사징계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26조(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.

-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다.
- ③ 위원장은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다.
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7조(제척사유) 강사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

제28조(위원의 기피 등) ① 징계대상자는 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강사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다.

제29조(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) 강사의 임면권자가 강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#### 4-1-24 강사인사규정

- 제30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- ② 강사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31조(징계의결)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면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있어서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강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하다.
- ④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32조(징계의결의 기한) 강사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3조(비밀누설의 금지) 강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34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등을 준용하며,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지 서식 제1호]

# 강사 임용 지원서

지원분야	접수번호	
------	------	--

#### 1. 인적사항

성 명	(한글) (영문)	출생월일	(생년은 생략)
현 주 소			
연 락 처		이 메 일	

#### 2. 주요학력사항

학교명 및 전공	수학기간	학위	졸업여부
	~		□과정 중 □수료 □졸업
	~		□과정 중 □수료 □졸업
	~		□과정 중 □수료 □졸업

#### 3. 자격사항

자격증명	발급기관	취득일자

#### 4. 주요교육·연구경력

기간	소속기관명	직위	경력사항
~			
~ .			

### 5. 주요연구실적(최근 5년간)

제목	학술지/출판사	게재확정일자	저자수	참여형태

첨부: 교육·연구경력·연구실적 증빙자료 사본 각1부

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원자: (인)

### [별지 서식 제2호]

# 강사 재임용 신청서

소	<del>속</del> :
성	명:
생년월	일:
<강의 평	경가 결과에 따라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 작성>

0000학년도 강사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제출자: (서명)

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

#### [별지 서식 제3호]

#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

학과	성명	생년월일	심사결과		
			□적합(70점 이상) / □부적합(70점 미만)		

심사 항목	배점	점수 기준	심사점수
-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입력기간 준수	10	0점 ~ 10점	
※ 미준수시: 강좌당 -2점	10	0 10 10	
- 성적입력 및 성적정정 기간 준수	10	0점 ~ 10점	
※ 미준수시: 강좌당 -2점	10	0 10 10 1	
- 출결관리 준수	10	0점 ~ 10점	
※ 출결 미준수시: 강좌당 -2점	10	0 10 10	
- 보강계획에 따른 보강 준수	10	0점 ~ 10점	
※ 미준수시: 강좌당 -2점	10	0.5 . 10.5	
- 강의평가 90점 이상	50		
- 강의평가 80점 ~ 89점	40		
- 강의평가 70점 ~ 79점	30	023 5023	
- 강의평가 60점 ~ 69점	20	0점 ~ 50점	
- 강의평가 50점 ~ 59점	10		
- 강의평가 49점 이하	0		
-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해야할 부분을	10	0.24 10.24	
개선하기 위한 노력	10	0점 ~ 10점	
합계	100점		
- 평가미달자 학과(부) 발전기여도 가점	10	0점 ~ 10점	

#### 심사결과 총점

- 1)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대상자로 한다.
- 2) 강의평가점수는 직전 3개 학기 평균점수로 평가한다.

(단, 평가기간 중 신규임용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전 1개 학기 점수로 평가)

- 3) 강사 재임용 평가표는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고 참석교원 과반수이상의 합의로 위원장이 작성한다.
- 4) 재임용 기준 미달 자에 대하여 건학이념 및 대학발전 학과(부) 발전의 기여도 및 학생지도에 헌신할 경우에 한 해 재임용 평가 위원과 합의해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여할 수 있음

평가점수 70점 미달자에 대한 의견(가점 최대 10점)	
(건학이념 구현, 대학발전 또는 학과(부) 발전의 기여도 및 학생지도 분야 공적 기술)	

위와 같이 평가합니다.

#### 년 월 일

위원 소속	직위	성명	(인 또는 서명)
위원 소속	직위	성명	(인 또는 서명)
위원장 소속	직위	성명	(인 또는 서명)

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

#### [별지 서식 제4호]

속:

번:

소 사

#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

성	명:								
생 년	월일:								
		<b>^</b> -1 11	2 4 2	2) =1 . 1	N - N +	111			
〈な/	사 재임	용 거무	사유에	대하여	구체적으	로 작성>			

위 강사는 강사인사규정 제14조(재임용 거부)에 따라 재임용이 거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20 년 월 일

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